

2021년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76건(안건번호 제2021-13197호~13676호)
 - 회의결과: 제2021-13197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제공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3198호~1320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57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57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1-13197호~1367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319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ㅎㅎㅎ'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스트리밍 형태로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제2021-13197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 ‘○○○○○○○○’의 전체인 1시간 3분 47초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에서 1,500원에 합법적으로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B 위원: 블로그 전체 디렉토리에 들어가 볼 수 있는지? 동 블로그의 성격을 보고자 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의 전체 디렉토리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게시물 중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직접 요청하여 삭제된 건도 보임.
- A 위원: ‘애니’ 외에 ‘영상’ 목록도 보여주기 바람. 이 블로그에 광고가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광고는 없음.
- B 위원: 구독자 수가 약 230명 정도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31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1-13197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블로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19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198호~1320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 ■’, ‘★ ★ ★ ★ ★’, ‘▼▼▼▼▼▼’을 무료 내지 12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5개의 게시물임
 (제2021-1319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6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78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19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41화 및 번외편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20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12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231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20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51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0-1320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 중이며, 총 41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3198호~1320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B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198호~1320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203호~1367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더 프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532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더 프롬'을 무료로 제공 중임. 넷플릭스에서 2020. 12. 11.에 공개한 미국 영화임. 2시간 12분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영화 '소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56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147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1. 1. 20.에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임. 전체분량 1시간 40분을 제공하고 있음. 영혼이 된 '조'가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지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시니컬한 영혼 '22'의 멘토가 되어 다시 지구로 돌아가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발생하는 이야기임.

(영화 '마녀를 잡아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659호는 2021. 10. 22 'HBO MAX'에서 공개한 '마녀를 잡아라'를 웹하드에서 190포인트에 판매 중임. 2시간 정도의 전체분량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 영국소설을 원작으로 한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로, 소년과 할머니가 어린이를 싫어하는 사악한 마녀를 만나게 되면서 피신한 리조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3203호~1367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0-13203호~1367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203호~1367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2021-13197호~1367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